#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112723호)

2021.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 목 차

Ι	. 제안경위1
п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1. 제안이유1
	2. 주요내용2
Ш	. 검토의견6
	1. 정부안 제출 배경 및 주요 내용6
	가. 정부안의 제출 배경6
	나. 정부안의 주요 내용7
,	2.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화10
	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10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요건 개선 ······22
	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31
,	3. 이원화된 규제 정비 및 신기술 성장기반 마련37
	가. 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정비 ·······55

4.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66
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명령권 신설66
나. 과징금 등 제재 규정 정비74
5.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개선98
가. 자율적인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활성화98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정비110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119
6. 그 밖의 개정 사항123
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123
나. 업무위탁 시 재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126
다. 가명정보에 대한 특례129
라. 개인정보의 사적인 이용 금지133
마. 시정조치 및 결과 공표136
<b>※</b> 참고자료 ····································
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140
2.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종류 및 유형142
3. EU 적정성 결정(Adaquacy Decision)144
4 자육규제단체 신규 지정십사 시 십사기주 ······· 147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 안 일 : 2021. 9. 28.

3. 회 부 일 : 2021. 9. 29.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 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25 조의2 신설)
  -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자동 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선(안 제15조제1항제4호, 안 제15조 제1항제7호 신설)

- 1)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2)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안 제28조의8 및 제28 조의9 신설)
  - 1)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 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라.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안 제35조의2 신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안 제4조제6호 및 제37 조의2 신설)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삭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 사.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3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항, 안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1)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 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 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 과징금 규정 정비(안 제64조의2 신설)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 Ⅲ. 검토의견

#### 1. 정부안 제출 배경 및 주요 내용

# 가. 정부안의 제출 배경

- □ 기존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행정안전부(공공/민간 총괄), 방송통 신위원회(온라인 분야), 금융위원회(금융 분야)가 나누어 수행하 고 있었으나, 지난 2020년 2월 데이터 3법1)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전담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통합하여 정비하였으며, 안전한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 근거 등을 마련하였음.
- □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 전환, 신기술의 발전, 글로벌 표준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을 신속하게 통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을

<sup>1) 「</sup>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례 형태로 단순 편입함에 따라 공공·오프라인 분야와 민간 온라인 분야에 대한 이원적 규제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 정보주체의 새로운 권리 도입이 추가 입법과제로 유보되었으며, EU·미국·중국 등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형벌 중심의 제재 체계 개편과 같은 글로벌 이슈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신기술 환경에서의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를 해소하며,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나. 정부안의 주요 내용

- □ 정부안은 제1장(목적)부터 제10장(벌칙)까지 총 10개의 장과 114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중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를 삭제하고, 69개의 조문을 개정하여(신설 18개, 수정 36개, 삭제 15개) 총 9개의 장과 117개 의 조문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 정부는 주요 개정 방향을 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 강화, ② 디지털 중심 법체계 정비, ③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④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으로 정하고 있음.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 구권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제도를 개선하며, AI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도입하고 자 하고 있음.
- 디지털 중심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하고,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해외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의 국외이전 방식을 다양화하고, 형벌 중심의 규제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며,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기 준으로 통일하고자 하고 있음.
-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법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표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기본 방향

개정 방향	세부 내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데이터 시대의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실질적 동의제도 개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시이된다 그래키에 미 기키스 시키키네 리크	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
이원화된 규제정비 및 신기술 성장기반 마련	이동형 기기 영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글도달 비세와의 성업성 콕모	형벌 중심의 규제를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	분쟁조정 관련 사실조사제 도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제 도입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화

#### 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 정부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수신기관)에게 전 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 고,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현 행	정 부 안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3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	<u>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u>
할 권리	
<u>&lt;신 설&gt;</u>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
	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u>있다.</u>
	1. 정보주체 본인

-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 3.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 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 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제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 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 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 인정보일 것
- 4.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

   가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

 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할 것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 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 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 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 전송 방법, 전 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신 설>

요구권 행사 지원

-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및 표준화
-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개인정보를 전송・관리・분석할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 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 었을 것
-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

<u>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u> 경우

- 2.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 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주체로부터 그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절차, 관리·감독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이란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본인 정보를 정보주체 본 인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2)

<sup>2)</sup>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데이터 활용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보주체의 적극적·능동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

<sup>(</sup>출처: 금융위원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2018.7.)

-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함)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이하 "CCPA"라 함) 등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3)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2월 금융분야의 개인정보인 신용정보를 규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의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신설되었으며,⁴)5) 2021년 6월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특정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주체의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음.6)

<sup>3)</sup> **EU GDPR**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데이터에 대한 독점을 완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였으며, **CCPA**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장 없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sup>4) 「</su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up>1.</sup>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sup>2.</sup>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sup>3.</su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sup>4.</sup> 개인신용평가회사

<sup>5.</sup>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sup>5) 「</sup>신용정보법」 개정을 바탕으로 시행될 예정인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자료 1>을 참조

<sup>6) 「</sup>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up>1.</sup> 행정기관등

<sup>2. 「</sup>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sup>3.</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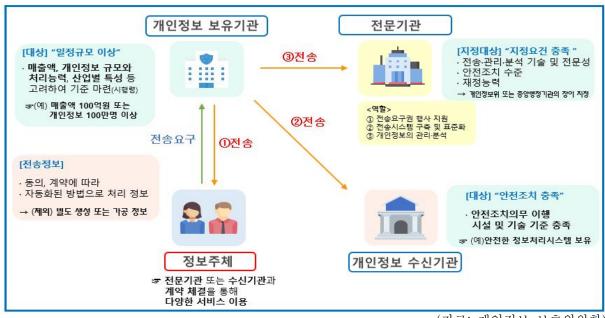
그러나 신용정보 등 국한된 범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 만이 부여되고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 요 구권을 신설하여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활용 방안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7)

- □ 이에 정부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수신기관)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또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나, 개인정보처리자보다 정보 열위에 있는 정보주체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산재된 개인정보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수 있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업무를수행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8)

<sup>7)</sup> 최정민 및 조영은,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0,11.

<sup>8)</sup> 참고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의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 대신 개인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소비자의 신용도·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 인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운영 체계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이동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통제권이 강화되고, 전 분야에 대한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일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현상을 완화하며,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9)

<sup>9) [</sup>개인정보 전송 대상 정보 유형(안)]

구분	전송 대상 정보
정보 · 통신	요금납부정보, 통신요금가입정보, 통신이용정보, 연체정보, 기기정보
교통	위치정보, 출입국정보, 탑승정보(항공·선박), 자율주행자동차 정보
보건 · 의료	진단 정보, 약물처방 정보, 병리검사 정보, 생체신호 정보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또한 보다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여 정보 주체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10)
- □ 다만,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부안에 따르면 안 제3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를 가리지 않고해당 대상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 본인이 아닌 제3자(개인정보 수신기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기술적·재정적 부담이수반되므로,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이 있음.

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상분야(안)]

구분	예상 지정 대상 기관	제공 서비스
의료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진료정보 등을 정보주체가 제공한 라이프로그 정보(운동량, 수면정보 등)과 통합 분석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식단 추천, 건강관리 코칭 등) 제공
TI	인터넷 기업	각 온라인 쇼핑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정보를 분석하여 쿠폰 제공 서비스, 물품 교체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교통	교통분야 공공기관, 교통카드사, 운수회사	대중교통 이용내역, 통행료 납부 정보 등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등
교육	국공립·사립 대학교, 민간 교육기관 등	학교,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구인중인 기업 등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고용) 서비스 제공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되, 본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11)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2] 본인/제3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 요건

구분	본 인	제 3자
정부안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전송방법	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민형배	□ 전송대상 정보 - 동의·계약에 근거하여 수집되거나, 보로 지정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 -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및 가급  ◆ 전송의무자 -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전송방법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로 전송	정보일 것 공을 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b>◈ 전송의무자</b>

<sup>11) 「</sup>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400)」

○ 둘째, 정부안은 개인정보 전문관리기관 지정요건을 ①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③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기술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등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법률상 요건을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예를 들어, 현행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도록 하거나,12)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 요건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13)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취소 요건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당연취소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요건만을 두고 있으며, 취소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을 두고 있지 않음.

<sup>12)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sup>13)</sup> 예컨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해당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6조제1항 제4호에서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지정 취소와 관련된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취소 사유를 추가하거나, 전문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지정 취소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일정 기간동안 다시 지정받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관련 입법례

정보통신망법(§23조의4①) "본인확인기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21③,④)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신용정보법(§14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	_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_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요건 개선

□ 정부안은 서비스 계약 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의 허용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 15조제1항제4호 등).

현 행	정 부 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
<u>을 위하여 불가피하게</u> 필요한 경우	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
	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
	<u>하기 위하여</u> 필요한 경우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u>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u>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저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 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 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 다.

2. <u>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u>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세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u>제15조제1항</u>
제28조의8
<u>제1항</u>
②
<u>다만, 제5호부터</u>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공
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 9.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 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4. (생략)

- 1. ~ 9.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8장----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17 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2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 정부안은 현행법 제15조·제17조·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안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4] 제15·제17조·제18조 관련 정부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불가피성 요건 없이도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②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58조(적용의 일부 배제)의 적용 대상으로 배제하여 법 적용대상으로 하되,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 및 제공 가능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③ 현행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 제공 가능 (목적 범위 내 한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적용 규정 일원화

- □ 첫째,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 주체와의 계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복잡하고 경직적인 동의제도 운용으로 인해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활용에 제약이 있고, 정보주체는 복잡한 고지사항·절차 등으로 인해 동의 절차 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14)

<sup>14)</sup> 예컨대,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2,000여명 중 단 19.8%만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음.

- 이에 정부안은 불가피성 요건을 삭제하여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15조제1항제4호), 기존 계 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과도하게 사전동의에 의존하던 문제점 을 개선하고, 기업의 합리적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둘째, 현행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 되는 개인정보'는 제3장부터 제7장(제15조~제50조)의 적용이 배 제됨.15)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사회에서 음식점, 카페 등 출입을 위해 수기명부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확진자의 동선 등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작성된 방문자출입명부의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16) 확진자의 동선 등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sup>15)</sup> 제3장(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7장(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sup>16) &</sup>quot;코로나 명부 팝니다"…개인정보 200만건 유통, 아시아경제, 2020. 11. 기사 등 참조

이에 정부안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개인정보는 현행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유로 포함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집하게 된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5조제1항제7호).

이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중위생 등의 필요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17) 「개인정보 보호법」

<sup>17) 「</su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u>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u>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u>질병관리청장</u>,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sup>1. ~ 4. (</sup>생략)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 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 약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sup>1 ~3. (</sup>생략)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폭넓은 적용배제를 인정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로 추가할 필요 가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 □ 셋째,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허용되나(제15조제1항제6호),18) 현행법 제17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정부안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다른 제3자에 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sup>1.</sup>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sup>2.</sup>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sup>3.</sup>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sup>18)</sup> 구체적으로, ① 요금 징수 및 청산, 채권추심, 소 제기 등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거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며,

②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월등해야 하고,

③ 해당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성이 낮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다만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제15조제1항제6호가 제17조 제공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이유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인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바, 정부 안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요건을 추가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넷째, 현행법은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 비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19)
  -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적용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20)

<sup>19) [</sup>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허용 사유 비교]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제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_	

<sup>20)</sup>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이에 정부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동등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21)

<sup>21)</sup>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다른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간 적용 규정의 일원화와 관련한 검토 내용은 37쪽 부터 54쪽까지를 참고할 것

# 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 정부안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현 행	정 부 안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u>&lt;신 설&gt;</u>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u>&lt;신 설&gt;</u>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	
	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하	
	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	
	<u>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에</u>	
	대한 거부는 개인정보가 제15조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 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 차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이란, 인적 부문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AI) 등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현재 기업의 인사·채용 부문, 의료 부문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향후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sup>22)</sup>

22) [분야별 자동화된 결정 예상 사례]

구분	자동화결정 유형	수집·분석 개인정보	가상사례(예시)
채용	AI 역량검사	<ul> <li>▶ 사고 및 행동 특성 분석</li> <li>- 게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답변</li> <li>▶ 얼굴 및 음성 분석</li> <li>- 역량검시 시 표정 및 감정 분석, 음성(톤, 음색 등)</li> </ul>	· A씨는 역량검사 시 PC의 카메라 문제로 얼굴이 흐리게 인식되어 표정 및 감정 분석에서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자동화된 결정은 인적 오류·차별 및 권한 남용을 감소하여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관리자들이짧은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며,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sup>23)</sup>
- □ 그러나 수집·분석 및 평가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 정확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평가 및 판 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EU GDPR은 정보주체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의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24)

구분	자동화결정 유형	수집·분석 개인정보	가상사례(예시)
인사	AI 인사이동	▶ 직원 업무숙련도 분석 - 업무수행 로그, 처리시간 등 ▶ 직원 경력 분석 - 근무기간, 출퇴근 거리·시간, 자격증 등	· B씨는 출퇴근이 멀어도 지인이 많이 살고 있는 C지역에서 영 업을 하고 싶었으나, AI인사이 동 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라 생소한 D지역으로 인사발령
의료	AI 보험청구 심사	▶ 진료내용 분석 - 진료내역,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 ▶ 집중 심사대상자 분석 - 진료내역별 평균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	· E씨는 특이체질로 일반인 보다 치료 기간이 길 수밖에 없음에 도, 보험회사에 청구한 AI 보 험청구 심사에서 부당한 보험 료 청구로 결정되어 보험료를 지급 받지 못함
출입국 관리	AI 출입국 심사	▶출입국 대상자 확인         - 지문, 얼굴, 여권정보 등         ▶출입국 거부 사유 분석         - 범죄정보, 납세정보 등	· A씨는 B국의 자동화된 공항 출 입국시스템에서 얼굴과 여권정 보가 불일치하여 입국이 거부됨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3)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가이드라인 번역본(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2017.
- 24) GDPR Article 22.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concerning him or her or similarly

-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혹은 금리·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자동화된 평가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평가에 활용된 기초 정보를 정정·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25)
- □ 이에 정부안은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응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적 개입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나 설명 등 요구권

significantly affects him or ger.

<sup>25) 「</su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up>1.</sup>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 공·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sup>2.</sup>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sup>1.</sup>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sup>2.</sup>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을 행사할 수 없음.

○ 둘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행사 가능함에 반해,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표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인정 범위

	- 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15①3)
기 H 기 시기	-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달성(§15①5)
거부권 인정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15①6)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 위해 일시적 수집(§15①7)
기보긔 시기 V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b>§</b> 15①1)
거부권 인정 X	-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하기 위한 경우(§15①2)
(설명권만 인정)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경우(§15①4)

주: 정부안에 따른 조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 정부안과 같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도입하는 것은 AI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에서 공정성과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결정 과정에 국민의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이해됨.
- □ 다만, 자동화된 결정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안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 ② 법률상의 근거, ③ 계약체결 및 이행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경위에 따라 거부권 인정 여부를 구분할 경우 데이터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경위를 별도로 기록해야 하고, 복수의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거부권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거부권의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부권의 행사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 상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하위법령 및 지침의 보완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26)

<sup>26)</sup>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면접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불합격 결정된 경우,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거부(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요구)인지 '결정 자체'에 대한 거부(채용 요구)인지에 대한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3. 이원화된 규제 정비 및 신기술 성장기반 마련

## 가. 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

□ 정부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제6장: 제3 9조의3~제39조의15까지)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와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의 체계를 일원 화하려는 것임(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삭제).

현 행	정 부 안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u>&lt;</u> 삭 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u>&lt;삭 제&gt;</u>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1항, 제2항은 삭제하고 제15조의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규정 적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	
<u>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u>	
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u>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 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

▶제3항 삭제하고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3 항의 일반규정 적용

▶제4항, 제5항 삭제하고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신설규정에 반영 <u>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u> 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 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 고에 대한 특례) ① 제34조제1항 및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 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 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 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 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 과하여 통지 ·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

▶제6항 삭제하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에 반영

#### <삭 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 고)의 일반규정과 통합 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 치
-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 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삭 제>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항에 통합

<삭 제>

<u>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u>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 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 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
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

<삭 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일반규정에 통합

<삭 제>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를 신설하여 일반규정으로 전환 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 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 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 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 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 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 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

#### <삭 제>

▶제39조의3(손해배상의 보장)을 신설 하여 일반규정으로 전환

#### <삭 제>

►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 단)로 이동하여 일반규정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

-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 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 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 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 여야 한다.
  -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 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 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 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 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 으로 본다.

<삭 제>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신설 하여 일반규정으로 전환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 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 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 시 및 이전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 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 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삭 제>

►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 8조의11(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일반 규정으로 전환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용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의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
  까지와 같은 조 제6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시 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

#### <삭 제>

► 제28조의10(상호주의)을 신설하여 일반규정으로 전환

#### <삭 제>

- ▶ 특례정비에 따라 별도로 방송사업자등 에 대한 준용규정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삭제
- ※ 방송사업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시청자는 정보주체이므로 일반규정 적용 가능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시청자"는 "이용자"로 본다.

-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

<삭 제>

▶제39조의15 삭제하고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규정으로 통합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 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 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 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 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 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 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 현행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규율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함.27)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조문인 현행법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13개 조문의 경우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율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 데이터3법28)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전담하게 되면서 해당 조문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음.
-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 정보 보호법」에 단순히 특례의 형태로 이전·병합하는 데 그쳐

<sup>27) 「</su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up>3. &</sup>lt;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u>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sup>28) 「</sup>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각종 의무 규정이 이원적으로 규율되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온라인 생활방식이 일상화됨에 따라 대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홈페이지·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정보통신서비스)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야 할 실익이 적어지고 있음.29)
- □ 이에 정부안은 이 법 제6장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 정보 처리 등 특례 규정을 삭제한 후,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모 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① 일반규정과 중복되는 특례규정(제39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4, 제39조의5)은 일반규정에 편입하고,
  - ② 실효성이 사라진 규정(제39조의6, 제39조의14)은 삭제하며,30)
  - ③ 확대 적용이 필요한 규정(제39조의3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의7부터 제39조의13까지, 제39조의15)은 일반규정에 신설하

<sup>29)</sup> 과기부·NIA의 「2020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전국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의 67.1%가 직접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99.7%는 업무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을 매개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sup>30)</sup> 현행법 제39조의6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효기간(1년)이 도과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여햐 하지만, 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의 한계로 인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의 문제가나타나고 있고, ② 이용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안은 이용자와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로 이원화하여 규율함에 따른 법 적용의 혼란<sup>31)</sup>을 해소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표 6] 정부안의 특례규정 조문별 일원화 방향

조 문	주요내용	일원화 방향
제39조의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1~3항)	기존 일반규정에 편입
	개인정보 구집 이동 중취(1~5성)	(제15조·제16조)
세39쇼ન3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개인정보 수집	일반규정 신설
	(4~6항)	(제22조의2)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제도	기존 일반규정에 편입
7110011114	게 단하도 마할하여 하여 한모 제고	(제34조)
제39조의5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기존 일반규정에 편입
710022-10	프로그시키 네틴 ㅋ네	(제28조)
제39조의6	유효기간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특례	삭제
7110022-10	마죠가단 # 다는 /#단 6도의 리기 국 대	(이용자·기업 불편함 해소)
제39조의7	이용자의 개인정보 동의철회권	기존 일반규정에 편입
71095771		(제37조)
제39조의8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일반규정 신설
10022 10		(제20조의2)
제39조의9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일반규정에 신설
100000		(제39조의3)
제39조의10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일반규정 신설
710022-110		(제34조의2)
제39조의11	국내대리인 지정	일반규정에 신설
		(제31조의2)
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	일반규정 신설
제39조의13	상호주의	(제28조의8~제28조의11)
제39조의14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삭제(방송사업자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
제39조의15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일반규정 신설
·1001-110		(제64조의2)

<sup>31)</sup>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온라인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오프라인 고객과 자사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을 적용받으며, 전자 위반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후자 위반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됨.

- □ 다만 이원화된 규율을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사항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업과 정보주체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39조의8에 따른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2011년도 발생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 에 도입되어,<sup>32)</sup>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용자에게 주기적(1년)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의무 화한 것으로, 정부안은 이를 일반규정(안 제20조의2<sup>33)</sup>)에 신설하 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주기적 이용내역 통지 제도에 대하여 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는 집행력이 부족한점,② 법정 통지를 가장한 피싱(phishing)<sup>34)</sup> 시도로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점,③ 이용내역 통지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률이 매우 낮은 상황<sup>35)</sup>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sup>32)</sup>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해 약 3,490만명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 성명, 생년월일 등이 유출되었음.

<sup>33)</sup> 안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수집한 <u>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p>34)</sup> 피싱(phishing)이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얻기 위해 시도하는 행위를 말함.

<sup>35)</s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이용내역 통지의 발송대비 열람률을 조사한 결과, 열람률은 연 평균 4.97%이며, 메일을 열어 상세보기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한 비율(실질적 열람률)은 평균 0.32%에 불과함.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①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도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36) ② 피싱 위험은 온라인을 통한 통지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로 이용 내역 통지 제도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유지하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현행법 제39조의9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기업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정보주체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제도로, 정부안은 이를 일반규정(안 제39조의337))에 신설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되, ①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충분한 여건이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② 준비금을 적립할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이 제외됨.

<sup>36)</sup>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0년 11월 26일 의결을 통해 페이스북에 대하여 이용내역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5천만원(5년간 ×연간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sup>37)</sup> **안 제39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u>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sup>1.</su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sup>3.</sup>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① 실제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후에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② 법원의 판결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 아닌 정신적 위자료로서 10만원수준의 소액만 인정하고 있으며, ③ 제도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사례가 없어 보험가입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손해배상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 민간(오프라인)과 공 공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는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38)

<sup>38)</sup> 정무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04p, 2021.03.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정비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 정비

□ 정부안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사유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명확히 하는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

현 행	정 부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영상정보처리기기"</u> 란 일정한 공간	7.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에 <u>지속적으로 설치되어</u> 사람 또는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u>으로</u>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	
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를 말한다.	<u>.</u>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u>제한)</u>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	<u>치·운영 제한)</u> ①
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u>영상정</u>	<u>고정</u>
<u>보처리기기</u> 를 설치·운영하여서는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필요한 경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신 설>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u>영상정보처리</u> 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 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u>영상정보</u>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 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

   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2	
<u>고정형 영</u> 정	<u> 정보처리기기</u> -
③	
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처리기기	<u>(이하 "고</u>

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

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 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4. (생략)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 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 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 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 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u>다)</u>
<u>시설의 경우에는</u>
<u>.</u>
1.・2. (현행과 같음)
3. 관리책임자의
4. (현행과 같음)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
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
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 현행법 제25조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 지만,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규율을 하고 있음.
- 더불어 현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는 "일 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제3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폐쇄회로 텔레 비전(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39)

<sup>39) 「</su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sup>1.</sup>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sup>2. &</sup>lt;u>네트워크 카메라</u>: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그런데 사회 전반의 CCTV 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스마트폰·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가 국민의 생활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어, 기술 혁신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어 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정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일원화된 규정을 하고 있던 현행법 제25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하고,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이를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하려는 것임.
- □ 안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유,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간의 관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고 있음.
- 첫째,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기 위하여 지속성(일정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을 요건으로 두고 있었으나, 정부안은 지속성 요건 이외에도 주기성(주기적으로 촬영) 요건을 추가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등 사람·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등 특정한 조건 하에서 주기적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의 종류가 증가하고, 촬영 기법이 다양해지는 등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둘째,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현행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40) 열화상카메라 등 촬영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위험이 낮은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운영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안은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등으로 한정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무분별한 촬영을 방지하고,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 위험이 없는 분야에서 영상정보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sup>40)</sup> 사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유턴 차량 신고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제25조제1항제4호의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제시(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출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례」 42p. 2021.7.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근거 신설

□ 정부안은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 리기기의 정의를 추가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 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25조의2 신설).

현 행	정 부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의)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
	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
	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
	<u>다.</u>
<u>&lt;신 설&gt;</u>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
	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
	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

- 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u>촬</u> 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항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 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후에 촬영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 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현행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처리기기에 한해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영상정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스마트폰·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영상 촬영과 유튜브·SNS 영상 공개 등으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함께 증가하고 있음.41)42)

<sup>41)</sup> 동양일보, "드론이 당신의 사생활을 엿본다", 2020. 11. 1. 등 기사 참조

<sup>42)</sup>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종류 및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를 참조

- 이에 정부안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정의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 특히 정부안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촬영 거부의사가 없다면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을 허용하는 Opt-out 방식을 취하되(제25조의2제1항제2호),4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시 '불빛, 소리, 안내판'등의 방법을 통해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의2제3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대해 Opt-out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도로, 공원, 행사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영상 촬영이 곤란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폰・자율주행차・드론・웨어러블・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 산업의 활성화에 기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sup>43)</sup> Opt-in 방식이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Opt-out 방식이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사후에 정보주체의 거부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지하는 방식을 의미함.

- □ 다만 정부안 제25조의2제3항 단서 및 제25조의2제4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촬영 사실을 표시할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고, 사후에 촬영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 알려야 함.
  - 그런데 '법령에서 정하는 소판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의 요 건이 불명확하고, 촬영 사실을 사후에 알리는 방법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 로,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보다 엄격하 게 정하거나, 쵤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사후 통지의 방 법에 대하여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44)

<sup>44)</sup> 예컨대,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4.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 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명령권 신설

□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의 절을 신설하여 국 외이전 요건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고,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이전에 대한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려는 것 임(안 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 신설).

현 행	정 부 안
<u>&lt;신 설&gt;</u>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u>&lt;신 설&gt;</u>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
	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u>있다.</u>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
	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u>규정이 있는 경우</u>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 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

   우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 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 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및 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 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 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절차 및 거부의 효과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 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 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 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한 경우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 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 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용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 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 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 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 현행법 제17조제3항(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9조의12(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45)

<sup>45)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u>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u>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의 수 요와 필요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한 국외이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46)
- □ 이에 정부안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을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인증조치·적정성 결정 등으로 보다 다양화하여 국외이전 요건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전을 중지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두려는 것임.
- 정부안과 같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것은 해외 직접구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적정성 결정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허용하는 해외 개인정보호 법제와의 간극을 좁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sup>46)</sup> 해외 주요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국외이전의 요건을 동의 외에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국 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법·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정(이하 "적정성 결정"이라 함)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EU GDPR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결정을 내린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과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경우 개인정보의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EU 적정성 결정(Adaquacy Decision)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자료 3>을 참조할 것

- □ 다만 해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경우 역내에서의 개인정보에 비해 통제 수준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를 제공받은 해외국가가「개인정보 보호법」 전반을 적용받도록 하는 역외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47)
- 참고로 EU GDPR은 EU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도 해당 법을 규율받도록 규정하고 있고,<sup>48)</sup>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또한 외국에서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역외규정을 두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등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으므 로,⁴9) 이를 참고하여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정부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적 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

<sup>47) 「</sup>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 국회 입법조사처 등, 2021.4.

<sup>48)</sup> EU GDPR Article 3. Territorial scope

<sup>2.</sup> This Regulation applie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f data subjects who are in the Union by a controller or processor not established in the Union, where the processing activities are related to:

<sup>(</sup>a) the offering of goods or services, irrespective of whether a payment of the data subject is required, to such data subjects in the Union; or

<sup>(</sup>b) the monitoring of their behaviour as far as their behaviour takes place within the Union.

<sup>49) 「</sup>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우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관리·보호로 인한 피해로 이어진 다음의 사후적 처리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따라서 안 제28조의9제1항제2호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수정하여 국외이전된 개인정보의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 과징금 등 제재 규정 정비

□ 정부안은 형벌 중심의 제재 체계를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고, 이법에 산재되어 있는 과징금 규정을 통합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등).

현 행		정	부	안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	<u>&lt;</u> 삭	제>			
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					
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					
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					
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					
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					
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					
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 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 3. <u>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u> 행 여부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 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 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 과하지 못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 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 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 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 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2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한 경우
  -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 4.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제2
   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
   보를 처리한 경우
-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 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 7. 제28조의8(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8. 제28조의9(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 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 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11.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한 경우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 ·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정도

-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 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 의 인과관계 및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의 정도
-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 모
-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 는 영향의 정도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 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 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 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 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정 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 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 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따라 징수한다.

- ⑦ 보호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한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 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 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 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 하여 지급한다.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 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

-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 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 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 공받은 자
-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 를 처리한 자
-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한 자
-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 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 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 공받은 자
-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 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u>4의5.</u>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 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자
-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

-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 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 집한 자
-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 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 조 또는 유출한 자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 2. · 3. (생략)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 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 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 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고정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 2. · 3. (현행과 같음)
-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 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 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 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를 수집한 자
  -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

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
   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
   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 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 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
   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3항 · 제22조제5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2.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 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 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 하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6.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

- 7의2.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 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 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 한 자
- 7의3.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 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 한 자
-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 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의2. 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u>자</u>
- 12의3.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 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8.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 조제6항(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 의4제1항·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10.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 1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2.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 <u>13</u>.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 12의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2의5. 제39조의7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 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 한 자
- 12의6.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 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
- 12의7.제39조의8제1항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2의8.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
- 14.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15.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6.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7.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18. 제35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송을 거부한 자
- 19.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 20.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 1.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 · 보관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 한 자
-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

   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21.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2. 제37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 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3.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4.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 25.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의2.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 런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 한 자
-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
   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5. 제27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 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 제28조의4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 <u>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u> 지 아니한 자
- 8.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3항 · 제4항, 제36조제2항
   · 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u><삭 제></u>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 현행법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벌 중심의 제재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 등 별개의 조항에 산재되어 있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전체 매출액' 혹은 '관련 매출액' 등으로 조항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50)
- □ 이에 반해 해외 주요국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주로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고,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51)
- 더불어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현행 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에 따른 부과액으로는 기업의 책임 준수를

50)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체계]

그ㅂ	이번 기상(이번 조상)	과징금	· 상한
구분	위반 사항(위반 조항)	산출 방식	정액
가명정보 처리 (§28의6)	가명정보처리 위반( <b>§</b> 28의5)	<u>전체 매출액의</u> 100분의 3	4억원 이하 (혹은 자본금의 100분의 3)
주민번호 분실 등 (§34의2)	주민등록번호 유출 & 안전조치 미비	-	5억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 위반 (§39의15)	이용·제공 위반(\$17①, \$18①②, \$19) 아동 개인정보 수집(\$22⑥) 동의없이 민감정보 수집(\$23①1호) 수탁자 관리 소홀(\$26④) 개인정보 유출 & 안전조치 미비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39의3①) 동의없이 국외 제공(\$39의12②)	<u>위반행위 관련</u> <u>매출액의</u> <u>100분의 3</u>	4억원 이하

<sup>51)</sup> EU GDPR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별도의 형벌 제재를 두지 않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통한 제재 규정만을 마련하고 있으며, EU(4%)·중국(5%) 등의 국가에서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sup>(</sup>출처: EU GDPR Article 83(General conditions for imposing admistrative fines) (4), (5), (6))

강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해외의 과징금 부과 수준과 비교해 보아도 부과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임.

[표 7] 과징금 부과액 구간별 현황

구 분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계
2018	0	0	3	4	0	0	7
2019	1	6	9	0	1	0	17
2020	0	6	14	3	0	1	24
2021.9월	0	3	10	1	0	1	15
합 계	1	15	36	8	1	2	63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표 8]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침해 관련 과징금 부과 사례

해 외	국 내
▶ 미국 : 페이스북 <b>약 5조9천억원</b> ('20.4.)	▶페이스북 <b>약 67억원</b> ('20.11. 개인정보위)
▶ 룩셈부르크 : 아마존 <b>약1조2백억원</b> ('21.8.)	▶페이스북 <b>약 64억원</b> ('21.8. 개인정보위)
▶ 아일랜드 : 왓츠앱 <b>약 3,110억원</b> ('21.9.)	▶인터파크 <b>약 44억원</b> ('16년, 방통위)
▶ 미국 : 유튜브 <b>약 2천억원</b> ('19. 7.)	▶위메프 <b>약 18억원</b> ('19년, 방통위)
▶ 프랑스 : 구글 <b>약 640억원</b> ('19.1.)	▶KT <b>약 7억원</b> ('12년, 방통위)
▶ 독일 : H&M <b>약 462억원</b> ('20.10.)	▶SKT <b>약 3억원</b> ('15년, 방통위)
▶ 영국 : 브리티시항공 <b>약 293억원</b> ('20.10.)	▶하나투어 <b>약 3억원</b> ('18년, 행안부)
▶ 독일 : 부동산회사 <b>약 195억원</b> ('19.10.)	▶넷플릭스 <b>약 2.2억원</b> ('21.8. 개인정보위)
▶ 이탈리아 : TIM사(이통사) <b>약 374억원</b> ('20.1.)	▶구글 <b>약 2억원</b> ('14년, 방통위)
	▶ TikTok <b>약 1.8억원</b> ('20.7. 방통위)
※ (주요사유): 처리근거 부족, 동의 위반, 아동의 개인	
정보 처리, 개인정보 유출 등	※ (주요사유): 유출, 동의 위반, 목적외 이용 등

주) 부과금액 순으로 정렬하였음.

(자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정부안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적 제 재로 전환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산 정하여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9] 제재 규정(과징금·벌칙) 정비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형벌 제재→경제적 제재로 전환	형벌적 제재 행위 중 일부를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일원화
	과징금 규정 통합
과징금 규정 정비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전체 매출액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일원화

□ 먼저 현행법상 형벌 규정은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다르게 제재하고 있어, 정부안은 이들 간의 '동일행위-동일규제'원칙을 달성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적 제재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표 10] 형벌 규정 개정 내용

	현 행 법		
구 분	일 반 규 정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정 부 안
수집·이용 미동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li>5년 이하 징역 또는</li> <li>5천만원 이하 벌금</li> <li>과 징 금</li> <li>(관련 매출액 3%)</li> </ul>	( <u>과 대료, 형벌 삭제)</u> · 과징금(전체 매출액 3%)
제3자 제공 미동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목적 외 이용·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하 벌금 · 과징금(전체 매출액 3%)
만14세 미만 아동 미동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징금 (관련 매출액 3%)	* 위반행위의 중요성 및 개인 정보 침해 위험 고려하여
민감정보 처리기준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처라자의 제재 정도 상향
개인정보 미파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li>3천만원 이하 과태료</li> <li>2년 이하 징역 또는</li> <li>2천만원 이하 벌금</li> </ul>	( <b>형벌 삭제)</b>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정·삭제 미조치 후 이용·제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벌적 제재 완화 & 과징금 추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전체 매출액 3%)
보호조치 불이행 → 개인정보 유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sup>)</sup>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관련 매출액 3%)	(형벌 삭제) · 과징금(전체 매출액 3%)

주1) 단,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경우 5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또한 현행법 제28조의6, 제34조의2 및 제39조의15에 산재되어 있는 과징금 규정을 안 제64조의2에 통합하고,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며, 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11] 과징금 규정 개정 내용

	현행법			정부안				
위반 사항(위반 조항)	근거	산출	정액	근거	산출	정액		
	법률	방식	78 71	법률	방식	70 71		
가명정보처리 위반(§28의5)	\$28의6	전체 매출액 3% 이하	4억원					
주민등록번호 유출 & 안전조치 미비	§34의2	_	5억원					
이용·제공 위반(§17①, §18①②, §19)								
아동 개인정보 수집(§22⑥)	8349115	\$39의15 관련 매출 3% 이히						
동의없이 민감정보 수집(§23①1호)			- 기-기 : 기-> 4기			전체		
수탁자 관리 소홀(§26④)			39915	4억원				
개인정보 유출 & 안전조치 미비				0 0 1-1		안 \$64의2	매출액	20억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39의3①)				_	3% 이하			
동의없이 국외 제공(§39의12②)								
고유식별정보 처리위반(§24, §24의2)								
국외이전 중지명령 위반(§28의9)		( kl k <del>l</del> )						
정정·삭제조치 위반(§36②)		<u>(신 설)</u>						
처리정지 위반(§37②)								

- 한편 정부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시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안과 같이 형벌 조항을 정비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벌칙을 부과함에 기인한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경미한법 위반행위임에도 형벌 중심의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더불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기업의 사전적 의무준수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제도의 실 효성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안의 내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내 데이터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로인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이 있음.52)
- 또한 정부안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53)
-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매출액(global turnover) 의 4~5% 이하의 과징금 체계로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안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수준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sup>52)</sup> 참고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경영 자총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핀테크산업 협회 등 11개의 단체는 2021년 6월 30일과 9월 30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음.

<sup>53) 「</sup>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 국회 입법조사처 등, 2021.4.

비해 과도한 편이 아니라는 입장임.54)

-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되 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한 국내 입법례를 보면,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55)

<sup>54)</sup>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Joseph Cannataci, 2021.7.

<sup>55) 「</su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up>1.</sup>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sup>1</sup>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sup>1</sup>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sup>1</sup>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sup>2.</sup>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sup>3.</sup>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u>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u>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음.

[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체계

					과징금	' 상한	
위병	위반행위		기준	<u>개정 전</u> 비율 정액		개정	후 <sup>1)</sup>
			비율	정액	비율	정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매출액	3%	10억원	6%	20억원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행위	상호출자 행위 & 순환출자 행위		법위반금액	10%	_	20%	_
	계열회사· 채무보증	에 대한 -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매출액	10%	20억원	20%	40억원	
부당지원: 사익편		月행위, <sup>면</sup> 취	평균매출액	5%	20억원	10%	40억원
불공정건래행위 등	기타 금지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관련매출액	2%	5억원	4%	10억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	5억원	-	10억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관련매출액	10%	20억원	20%	40억원
		시업자 단체	관련매출액	5%	10억원	10%	20억원

주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2월 전부개정되어, 과징금 부과 비율 및 상한이 2배로 상향되었으며, 상향된 기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5.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개선
  - 가. 자율적인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활성화
- (1) 자율규제단체 및 자율규제단체 연합회 근거 마련
- □ 정부안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단체의 자율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자율규제단체 연합회'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호,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현 행	정 부 안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	
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의 제정ㆍ시행 지원	보호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규
	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의 제
	<u>정·시행 지원</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의 지정)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 2.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 3.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

   선 활동
- 4. 그 밖에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

   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 또는 단체일 것
- 2.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능력을 갖출 것
- ④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규 제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신 설>

- 2. 제3항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약을 제정· 시행하는 자율규제단체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운 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3(자율규제단체 연합회의 설립) ① 자율규제단체와 개인정보처리 자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는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 ④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 및 평가
  - 2. 자율규약 제정·개정 지원 및 이행 점검
  - 3.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컨설팅 지원

- 4.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⑤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 연합 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⑥ 자율규제단체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 ①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단체 연합 회의 설립 및 운영,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 제1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하여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56)

<sup>56) 「</sup>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7조(자율규제단체의 지정) 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협회·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율규제 단체 지정신청서와 제13조에 따른 연간 수행계획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협회·단체가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역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심사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를 지정 확정한 후 별지 제2호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6조(업무의 지원)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sup>1.</sup>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파견, 자율점검 지원

<sup>2.</sup>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 인식제고 교육 실시

<sup>3.</sup> 웹 취약점 점검, 보안도구의 제공 등의 기술지원(단, 보안도구 제공 등 일부 기술지원은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만 해당)

<sup>4.</sup>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등

 ○ 자율규제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 활동, 자율규약 제·개정, 개인정보 자율 점검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57) 2021년 10월 기준 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약·복지 등 11개 분야에서 22개 의 자율규제단체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 [표 13] 자율규제단체 지정 현황

(2021년 10월 기준)

업종	자율규제단체명(지정일)		
(단체 수)	사설ㅠ세단세당(시앙길/		
부동산(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차량임대(1)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여행·숙박(2)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체육(2)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교육(1)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야(7)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합			
의약(7)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복지(2)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통신(3)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중선(3)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방송(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쇼핑(1)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스타트업(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sup>57) 「</sup>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9조(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up>1.</sup>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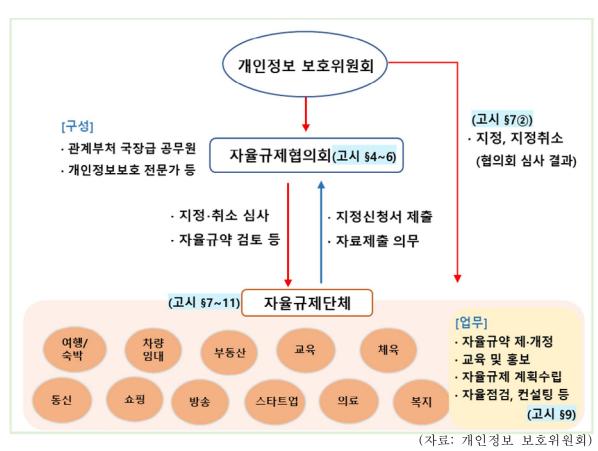
<sup>2.</sup>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sup>3.</sup>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개정

<sup>4.</sup>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sup>5.</sup> 그 밖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한편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 자율규제단체의 연간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58) 현행법 및 고시에 근거한 자율규제단체의 운영체계는 [그림 2]와 같음.



[그림 2] 자율규제단체 운영 체계

<sup>58) 「</sup>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4조(자율규제 협의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sup>1.</sup>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

<sup>2.</sup> 제10조의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검토

<sup>3.</sup> 제13조의 연간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

<sup>4.</sup> 제14조의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에 따른 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sup>5.</sup> 그 밖에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그러나 자율규제단체는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법적 효력이 없는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자율규제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59) 자율규제단체의 열악한 인력·재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체의 교육·컨설팅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총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 정부안은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지정취소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규제단체의 추가적인지정과 소속 회원사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를 통해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기대됨.
- 다만 정부안은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요건으로 ① 분야별 개인정 보처리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 또는 단체이고, ② 자율규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 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자율규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의 내용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별표에 따르면, 현재 자율규제단체 지정 시 전문인력 보유 현황,

<sup>59)</sup> 정무위원회 「2020년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예산의 가용성, 개인정보 보호활동 수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600 이와 같은 심사 요소를 법률에 직접 제시하여 전문 능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sup>60) 「</sup>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별표1]에 따른 자율규제단체 신규 지정심사 시 심사기준에 관한 내용은 <참고자료 4>를 참조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및 협의회 구성

□ 정부안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 행	정 부 안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	<u>등)</u> ①
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
	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u>④</u> <u>제3항</u>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	
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생 략)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u>제2항</u>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 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u>된</u> 다.

<신 설>

<신 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현행	제4항과	같음)
<u> </u>	\ L 0	'1 1 0 1	

<u>(6)</u> ------ <u>제3항</u> -----

\_\_\_\_\_

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공공기관과 약 78.5%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61)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는 개인정보 법규 준수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 장치중 하나로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확대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운용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 CPO) 제도는 EU GDPR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 제도에 비해 독립성 요건이 미비함에 따라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62)
-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신기술 발전, 비대면 확산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

<sup>61)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up>1.</sup>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sup>2.</sup>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sup>3.</sup>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sup>4.</sup>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sup>5.</sup>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sup>6.</sup>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sup>7.</sup>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sup>62)</sup> EU GDPR은 DPO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본인의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DPO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있음. (출처: EU GDPR Article 38. Position of the data protection officer)

고하고, 자율보호 문화 확산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이에 정부안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안 제31조제6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보호, 정보의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31조제7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의회를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정부안과 관련된 국내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정보의 교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sup>63)</sup>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64)</sup>

<sup>63)</sup>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근거하여, 기업에서 정보보안 업무에 관련된 총괄책임을 지는 임원을 말함.

<sup>64) 「</su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u>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u>

#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정비

□ 정부안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의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 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현 행	정 부 안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②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u>30명</u>
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공공기관이</u> 제2항에 따른 분쟁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u>(자료의 요청 등)</u> ① (생 략)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신 설>

<신 설>

② (생략)

<신 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 략)

- ③ <u>제1항</u>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 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①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 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u>기명날인</u>하여야 한다. <u><단</u> 서 신설>

⑤ (생략)

-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 람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 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 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 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 (援用)하지 못한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3	제2형	<u></u>	 	 

- <u>수락</u>-----.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의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소송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65)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위하여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는 현재 위원장 1명 및 당연직위원 1명 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개인정보 분쟁 조정의 절차를 살펴보면, ① 당사자 간에 원만한합의가 이루어져 해결되는 경우(조정 전 합의)가 있고, ② 합의가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정부 회의에 회부하여 법리적 판단을 하게 되며,66) ③ 조정부 심의 결과개인정보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조정안을 제시하고, ④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이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sup>65)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up>66)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최근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처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67)
- 그러나 현재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수요에 원만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분쟁조정 통지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 14]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정부안의 개정 내용

개정 조문	주요 내용			
§40 <sup>2</sup>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으로 증원			
§43③	분쟁조정 통지에 응할 의무가 있는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45 <sup>2</sup>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실조사제도 도입			
§45의2	フ거거원세계에 이거의 기스 &소 이오(極田) 그기68)			
(신설)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 소송 원용(援用) 금지68)			
§47③	조정안 미응답시 조정 수락 간주			
§50의2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개선의견 통보			

67)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건수 추이(2017 ~ 2021.9.)

2017	2018	2019	2020	2021 (9월 기준)
291건	275건	352건	431건	588건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처: 김일룡, "민사조정법상 진술의 원용제한 규정에 대한 미국법제에서의 시사점", 한국법학원, 2011.4.)

<sup>68)</sup> 안 제45조의2와 관련하여, 「민사조정법」 제23조가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u>당사자가 조정절차에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행해진 의견이나</u>양보의 내용이 후속하는 소송절차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염려 없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임.

- □ 정부안은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원만하게 대응하고, 분쟁조 정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로 조정의 실효성에 대응하며, 사실조 사제도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으로 조정의 심의·결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첫째, 안 제43조제3항은 분쟁조정 통지에 응할 의무를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하여 증가하는 조정불응 또는 참여거부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나,69)70) 피신청인에게 자료 제출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추가적인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9) [분쟁조정 피신청인 조정 참여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9월
공공기관(조정취	함여 의무)	26	36	33	64	57
공공기관 이외	조정참여	265	239	319	367	500
중중기관 이외	조정 불응	4	7	31	29	31
합 계		291	275	352	431	588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70) [집단분쟁조정 관련 피신청인 조정참여 현황]

피신청인	SK컴즈	롯데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홈플러스	홈플러스	페이스북
신청인 수	85명	92명	50명	91명	81명	521명	181명
피해규모	3,500만명	2,600만건	2,500만건	5,300만건	4만 (	9천명	330만명
접수일	'12.7.26.	'14.5.13.	'14.5.13.	'14.5.13.	'15.3.11.	'15.3.18.	'21.4.16.
조정 참여 의사	조정 참여	참여 거부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은 소송절차에 비해 특별한 형식이나 전문적 내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선임 등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비해 사회적·경제적으로취약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분쟁에 직권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제도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조정에 응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국내 유사 입법례로는 「공동주택관리 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음.71)
- □ 둘째, 정부안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하여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 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장조사 에 입각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 기관의 관련 자료 등 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분쟁조정의 심의·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sup>71) 「</sup>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② <u>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u> 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sup>「</sup>거석사언기보변」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다만 사실조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상호 조정을 기반으로 분쟁의 원만하고 빠른 해결을 도모하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사실조사권 도입에 따른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등 긍정적 효과 와, 분쟁조정 과정에의 과도한 권한 침해로 인한 분쟁 조정 회피 등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실조사권과 관련한 국내 입법례를 살펴보면,「환경분쟁조정법」
   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심사관에게 사업장 등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사실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실조사의 강제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72)
- ✓ 셋째, 현행법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조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로인해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sup>72) 「</sup>환경분쟁조정법」

제3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응하여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정부안은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수락'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이해되나,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율적인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안 통지 시조정안의 수락 간주 기준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도록 조치함으로
   써 당사자의 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 이와 관련된 국내 입법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한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73) 「주

<sup>73) 「</sup>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u>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u>

<sup>「</sup>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u>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u>으로 본다.

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음.74)

<sup>74) 「</sup>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준수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 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 행	정 부 안
<u> </u>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처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u>있다.</u>
	1. 제30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작성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
	성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
	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내용을 이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파기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5)
-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 이드라인」을 정하여 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sup>75) 「</sup>개인정보 보호법」

<sup>1.</sup>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sup>2.</sup>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sup>3.</sup>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sup>3</sup>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 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sup>4.</sup>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sup>5.</sup>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sup>6.</sup>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sup>7.</sup>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sup>8.</sup>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음.76)

- 그런데 현행법 제30조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 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을 뿐, 수 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실제 이행여부에 대 해 확인 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개인정 보 처리방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77)
- □ 이에 정부안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준수하였는 지 여부, ②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 지 여부, ③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는 지 평가하고,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76)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 번호 등 연락처
-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2020.12.)

<sup>77)</sup>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작성한 「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2,500명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58%이고, 이 중 44.1%만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에 맡겨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부적절하게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복잡하게 작성됨에 따라 이루어지던 형식적 동의관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임.
- 다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불이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후속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국민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선 권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 가 있는 경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78)

<sup>78) 「</sup>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u>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u> 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업자에</u> 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up>1.</sup>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sup>2.</sup>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up>3.</sup>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sup>4.</sup>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 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sup>5.</sup>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sup>6.</sup>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6. 그 밖의 개정 사항

## 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정부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특례(제39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일반규정(제22조제6항)에 분산되어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안제22조의2 신설 등).

현 행	정 부 안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
	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
	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
	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u>여야 한다.</u>
<u>&lt;신 설&gt;</u>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
	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
	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
	<u> 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 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 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 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법제22조제6항(개인정보처리자)와 제39조의3제4항~제6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7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뿐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알기 쉬운 언어 사용'의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마련 의무'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sup>79)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u>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u> <u>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u>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실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 태조사」에 따르면, 3세부터 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91.2%, 10대 의 인터넷 이용률은 100%로 현재 아동의 인터넷 사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아동은 성인에 비해 언어나 인지능 력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기 때 문에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수준이 크다는 우려가 있음.80)
- □ 정부안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고, 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 15]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통합

	현 행 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 정 안
법정대리인 동의	제22조제6항	제39조의3제4항	안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알기 쉬운 용어	_	제39조의3제5항	안 제22조의2 제3항
개인정보 보호 시책	_	제39조의3제6항	안 제5조제3항

<sup>80)</sup>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연구"(2019.12)

#### 나. 업무위탁 시 재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

□ 정부안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의 개념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자준용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 정 부 안 현 행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 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 리 제한) ① -----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문서로 하여야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 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 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 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u>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u>-----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 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

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⑥ (생략)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 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 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 용한다. 한다.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8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2,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 □ 현행법은 수탁자의 개념을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 정보처리자(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자로부터 다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음.81)
-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舊 「정보통신망법」에는 재 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82) 데이터 3법 개

<sup>81)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u>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u> <u>하 "수탁자"라 한다)</u>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한다.

<sup>82)</sup> 법률 제 140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⑦ 수탁자는 <u>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u>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위탁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있음.

- □ 정부안은 수탁자의 개념에 수탁자로부터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업무의 재위탁시 최초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재위탁에 의한 개인정보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 한편 수탁자의 준용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수탁자의 준용 규정을 상세화하고 있는 정부안 제26조 제8항는 벌금·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조항이 수탁자에게 준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규정(제71조 ~75조) 각 호의 위반 사항에서 제26조 제8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법 위반 시 수탁자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83)

<sup>83)</sup> 정부안 제71조~제75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 76쪽부터 89쪽 중 정부안의 조항을 참조할 것

#### 다. 가명정보에 대한 특례

□ 정부안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명정보에 적용 배제되었던 파기 조항(제21조)을 삭제하여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파기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7).

#### 부 혂 颜 정 아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 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수 있다. 하거나 가명정보를 -----.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 제28조의7(적용범위) <u>가명정보에 관하</u> 여는 제20조, 제20조의2 ----- 제 <u>조, 제21조,</u> 제27조, 제34조제1항, <u>제3</u> 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u>의3, 제39</u> 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가명처리")한 정보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sup>84)</sup>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또는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더불어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현행법 제28조의7은 개인을 식 별할 수 있어야 이행이 가능한 12개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적용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6] 가명정보에 적용되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구 분	조 항	내 용
	제20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u>제21조</u>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파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제27조	·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 등을 고지
	제34조제1항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정 보주체에게 통지
	제35조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제36조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 요구
	제37조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제39조의3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시 이용 자의 동의 필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39조의4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
	제39조의6	•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파기
	제39조의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
	재39조의8	·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

<sup>84)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u>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u>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 그런데 현행법 제28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①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만이 해당하는 것인지, ②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85)
- 또한 현행법 제28조의7에 따르면 가명정보에 대한 파기 의무(제 2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 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가명정보가 파기되지 않아 가명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8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가명정보 수집·이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제39조의3)가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이원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87)88)
- □ 이에 정부안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명정보의 경우에도 파기 의무를

<sup>85)</sup>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에 대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허용된다고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sup>86)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p>87)</sup>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 의무에 대한 일반규정은 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가명정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에 포함되지 않음.

<sup>88)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준수하도록 하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명처리에 대한 법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면서도 가명정보에 대한 파기 의무와 수집·이용 시 동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명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17] 정부안 제28조의7에 따른 배제 조항 정비

배제 조항 주요 내용	현 행 법	정 부 안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0조	(좌 동)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파기	제21조	<삭 제>
·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 등을 고지	제27조	(좌 동)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	제34조제1항	(좌 동)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	제35조	(좌 동)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	_	제35조의2(신 설)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 요구	제36조	(좌 동)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제37조	(좌 동)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시 이용 자의 동의 필요	제39조의3	< 시 기>         *일반규정과의 적용         일원화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	제39조의4	<삭 제> *제34조제1항에 통합
•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파기	제39조의6	<삭 제> *정부안에서 내용 삭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	제39조의7	<삭 제> *제37조에 통합
·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	재39조의8	제20조의2(신 설)

#### 라. 개인정보의 사적인 이용 금지

□ 정부안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호제3호 및 제71조제10호).

현 행	정 부 안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	제59조(금지행위)
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	3
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	
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u>이용,</u> 훼손 <u>,</u>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1조(벌칙)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
의 개인정보를 <u>훼손,</u> 멸실, 변경, 위	람의 개인정보를 <u>이용, 훼손,</u> 멸실,
조 또는 유출한 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현행법 제59조는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경우 타인 정보의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이용'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 수능감독관에 대하여, 감독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현행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89)90)
- □ 이에 정부안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이해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정보주체(5 0.6%)의 과반수(27.4%)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을 경험하는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91) 정부안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무단이용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sup>89)</sup>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9고단3278 판결

<sup>90)</sup> 다만, 2심에서는 수능 감독관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고 해석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음.(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91) 해당 조사는 만 12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일반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18]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경험(2020년)

경험	경험 있음 <sup>주)</sup>						
		개인정보	개인정보 무단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기타	
없음		유출	수집·이용	도용	권리거부	기다	
49.4%	50.6%	28.0%	27.4%	11.6%	3.1%	0.7%	

주)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하여, 침해 유형의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자료: 2020 개인정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참고로 정부안과 관련된 국내 입법례를 살펴보면, 금융 분야의 개 인정보인 개인신용정보를 규율하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 사등(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 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92)

<sup>92) 「</su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시정조치 및 결과 공표

□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법을 위반 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공표제도의 대상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하며, 공표 대상자에 대해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및 제66조).

현 행	정 부 안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	
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u>가 있다고 인정되면</u>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	<u>&lt;삭 제&gt;</u>
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	
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	
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	
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u>제65조</u>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u>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 -----

-----.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 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 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 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

□ 현행법은 ①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②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개인정보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93)

<sup>93) 「</sup>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up>1.</sup>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sup>2.</sup>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sup>3.</sup>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그러나 시정조치 명령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법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게 위법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조치 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시정조치 제도의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 □ 한편 현행법 제66조는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징계권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처분에 대한 공표 제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표 대상 자에게 공표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 비한 상황임.94)
- 이에 정부안은 과징금 처분을 공표 제도의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처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표 명령제도를 통해 현행법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이해됨.
- ㅇ 이와 관련된 입법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sup>94)</sup>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표 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조치 사실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입장임.

관한 법률」은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95)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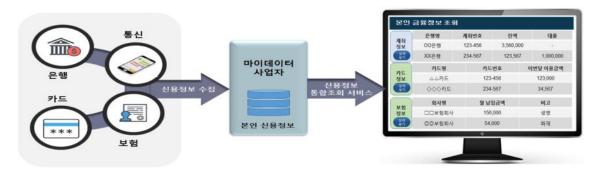
02)6788-5113

<sup>95) 「</su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u>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u>,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u>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u>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 □ (개념)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 (i) 본인정보의 일괄수집·조회 서비스를 기초로 (ii) 금융상품 자문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
  - 신용관리 등 본인정보 관리·활용에 대한 **수요가 중대**되면서 **핀 테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시장**이 형성
- □ (유형)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신용관리 지원,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 ①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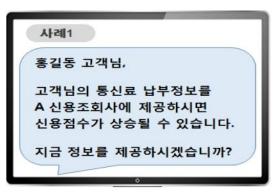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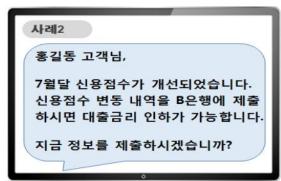
② (재무현황 분석)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 재무 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





- ❸ (신용관리·정보관리 지원) 금융소비자의 재무현황을 기초로 신용상 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제공
  - \* (예) 부채비율·지출비중 등 재무행태 조정뿐 아니라, 개인신용평가 기초자료 등을 분석하 여 신용평점 개선에 필요한 정보 제출. 잘못 등록된 정보 삭제 등을 권고
  - 필요시, 신용조회사(CB사)·금융회사 등에 **긍정적 정보 제출, 부정** 적 정보 삭제·정정 요청 등 본인정보 관리업무도 수행





- ④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 개별 소비자별로 현재 신용상태· 재무 현황 하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 상품별 가격·혜택을 상세 비교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 상품을 추천
  - \* (예) (i) 특정 개인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 금리 대출상품을 추천 (ii) 특정 개인의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고 혜택 카드상품을 추천
  -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상품과의 비교 등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추천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2018.7.)

## <참고자료 2>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종류 및 유형

□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 착용·휴대·부착하여 일시·주기적 촬영

① 착용형: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촬영



#### ② 휴대형 : 사람이 손쉽게 휴대하면서 촬영



## ③ 부착형 : 이동 가능한 물체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촬영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참고자료 3> EU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 川品

- EU의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의 국가가 <u>GDPR</u>\*이 <u>요구하는 수준과</u>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인정하는 제도
  - \*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보호법('18.5.25. 시행)
  -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체결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 가능

구분	적정성 결정 국가: 총13개국	
	▶ 11개국 :	
GDPR 시행 전	스위스('00.7.), 캐나다('01.12., 부분 적정성),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아르헨티나('03.6.), 건지 섬('03.11.), 맨 섬('04.4.), 저지 섬	
('98.10.~'18.4.)	('08.3.), 페로 제도('10.3.), 안도라('10.10.), 이스라엘	
	('11.1.), 우루과이('12.8.), 뉴질랜드('12.12.)	
GDPR 시행 후	- 07   7 - 0  H/'40 4 \ 01 7/'04 0 \	
('18.5.~ 현재)	▶2개국: 일본('19.1.), 영국('21.6.)	

## ② 적정성 결정 요건

□ EU 적정성 결정 기준은 ① **상업적 부분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분야와 ②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접근 및 이용** 분야로 구성

## 【① 상업적 부분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요건(16개 항목)】

구 분		적정성 결정 요건
I 변원이	718	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본 개념과 원칙
	기본 원칙	②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개인정보 처리 원칙
	(9)	③ 목적 외 이용 제한 원칙

구 분		적정성 결정 요건			
		④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유지 및 최소한의 수집, 처리 원칙			
		⑤ 수집목적, 처리과정 등의 투명성			
		⑥ 처리 목적상 필요최소 범위로 보유기간 제한			
		⑦ 기술적·관리적 보안과 기밀 조치			
		⑧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중지의 권리			
		⑨ 정보 재이전시, 이전받는 제3자의 적절한 보호수준 확보			
	太 71	⑩ 민감 정보 처리시 추가적 안전 조치 규제			
	추가 원칙	⑪ 다이렉트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전 제한			
	(3)	②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고지 의무 및 반대할 권리 보장			
	③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조사·감독·집행 체계				
절차적 기준 (4)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제도 준수를 감독기관에 입증 책임 체계				
	⑩ 정보 <sup>2</sup>	주체의 권리행사 및 구제 신청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			

# 【②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접근·이용) 요건(4개 항목)】

적정성 결정 요건	세부 내용
① 분명한 법적 근거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공개된 법령·규칙에 근거하여야 함
②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성과 비례성 입증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는 법에서 정한 목표 내 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함
③ 독립적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는 독립적 감독을 받아야 함
④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정보주체들에게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공해야 함

## ③ "추가적 승인절차" [적정성 결정 대체 수단]

#### A '적절한 안전조치(appropriate safeguards)' (GDPR 제46조, 제47조)

- ① 법적강제력 있는 기구, ②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s)\*, ③ <u>표준정보보호조항(SDPCs, 舊 SCCs)\*\*\*</u>, ④ 승인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⑤ 승인된 인증 메커니즘(certification mechanism)
  - \* Binding Corporate Rules(GDPR 제47조): 해당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이 법적으로 구속되어 모두 준수해야 하는 규칙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 내부 규율, 피해보상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데, 활용사례가 많지 않음
- \*\* 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GDPR 제46조): EU집행위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 내부규율, 피해보상 등 필수적인 조항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
- 한편, 舊 Directive(GDPR 前身)에 따라 승인된 BCRs, SCCs(現 SDPCs)은 GDPR 시행 후에도 효력 유지(GDPR 제46조, 제97조 등 참조)

# B 구체적 상황에 따른 예외(GDPR 제49조 제1항 본문)

- ①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② 계약 체결, 이행, 완료에 필요한 경우, ③ 공익상 중요한 사유, ④ 법적 주장 및 방어에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중대한 이익 보호(+동의가 불가능한 상황), ⑥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일반에 제공되는 정보 목록

## ○ 처리자의 "중대한 정당한 이익(compelling legitimate interests)"

- "A", "B"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처리자에게 역외이전을 하여야 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역외이전이 가능하나,
- 이전 가능한 정보주체의 수 및 이전 횟수가 제한되고 이익형량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vs 정보주체의 privacy) 및 감독기구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됨(GDPR 제49조 제1항 단서)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참고자료 4> 자율규제단체 신규 지정심사 시 심사기준

# □ 심사기준 세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심사기준	비고
량 만 약 부	전문인력 활용성	20점	o 개인정보 전문인력 보유 및 향후 인력배 정 가능성 여부	
	예산 가용성	20점	o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예산배정 가능성 - 자율규제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배정여부 및 향후 예산배정 가능성 여부	
	활동수행 경험도	20점	o 회원사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수행한 실적 및 추진 경험	
계획 부문	활동참여 의지도	20점	o 회원사의 개인정보 특징, 보유량, 취약분 야 등 회원사 개인정보 현황 파악 정도 o 자율규제단체 참여를 통한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참여의지	
	활동목표 명확성	20점	o 자율규제 수행계획의 적극성 및 구체성 - 자율규약/자율점검 목표, 이행점검, 교 육 및 홍보활동 등	
계		100점	(자료: 「개이정보보ㅎ 자유규제다체 지정 등에 과하 규;	저. 벼고)

(자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